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제정일 2020.08.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9조 내지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여부 등)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여부, 찬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수도,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행사방향) ①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② 회사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별도자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을 준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5조(중립적 투표) 회사는 법 제8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7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8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거나,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반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제9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충족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 절차

제11조(주주총회 개최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운용담당팀장이 결정한다.

② 운용담당팀장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용담당팀장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④ 제3항의 의결권행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 원 : 운용담당임원, 운용담당팀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⑤ 제3항의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운용담당팀장은 제3항의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의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주주 혹은 고객에 대한 수탁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기 위하여 [별첨자료]와 같은 가이드 라인을 원칙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별첨양식]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운용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운용담당팀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록의 유지관리 및 공시

제14조(기록의 유지관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87조 제8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

의결권행사 내역서

지원담당	운영팀장	운영임원

1. 기업명 :
2. 기준일 :
3. 의결권행사수량 :
4. 주총내역

주총일						
주총의안 및 주요내용						
의결권 행사 내용	의안	찬성	반대	중립	행사안함	기타
의사결정 사유						

5. 관련되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조항 등 :

[별첨자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 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규모,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도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축소하는 정관개정안에 반대한다.

4.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주체의 변경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게 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다만,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③ 이사회 승인항목인 사채 발행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정관개정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금액, 종류, 기간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8.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9.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0. 이사회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1.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2.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3.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14.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나치게 유리된 경력 및 능력 보유자는 제외한다.

15.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

16. 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7.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18.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9.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0. 이사 및 경영진 보상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1.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II-5. 자본 구조

22. 자본구조의 변경

신주발행, 채권발행, 채무재조정 등 자본 구조의 변경은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세부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3.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과도하게 희석시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24. 주식연계채권

- ①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및 전환은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함에 찬성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5. 이사의 선임

-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보다 적합한 후보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26.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 2.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 3. 재직할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
- 4.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27.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5. 이사의 선임 및 26.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28.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29.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VI.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31. 합병 및 영업양수도, 분할합병

- ① 합병 및 인수, 영업양수도,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안은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 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VII. 자본의 감소

32.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VIII. 기타

33. 안건 상정

다수의 안건이 일괄 상정된 경우, 이 중 일부 안건에 반대하면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34.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주주총회 5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35.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 ②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36. 제3자 배정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37.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1

엘에프자산운용은 고객, 수익자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엘에프자산운용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엘에프자산운용의 스텐더드십 코드”를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 엘에프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상의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수익자 최선의 이익을 위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주주활동으로서 의결권행사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적극적인 발언 등 넓은 범위의 주주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회사의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발생 가능성을 파악, 점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칙2

엘에프자산운용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 또는 향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엘에프자산운용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하는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엘에프자산운용은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투자대상 회사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이해상충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등이 항상 존재하므로 각 본부에서 이해상충 문제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아래의 유형별로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당사와 투자자
- 당사의 관계회사와 투자자
- 당사의 임직원과 투자자
-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원칙3

엘에프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엘에프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적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원칙4

엘에프자산운용은 투자대상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엘에프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주요 재무 및 비재무 경영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원칙5

엘에프자산운용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엘에프자산운용은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이행을 다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의결권 행사의 찬/반 행사 내역과 그 구체적 사유, 의결권 미행사 사유 등이 포함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원칙6

엘에프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대하여 고객 및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엘에프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질의, 의견서 제출, 배당제도 개선 요청 등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의 반응 및 회신내용을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칙7

엘에프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엘에프자산운용의 운용담당자 및 리서치 담당자는 기업탐방 등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투자회사 기업과 그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 및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 분	성 명	소 속	연락처
책임자		자산관리본부장	
담당자		자산관리팀	